

소득세법상 인세(印稅)수입의 소득분류에 관한 소고*

오 문 성**

차 례

- I. 서론
- II.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1. 사업소득
 - 2. 기타소득
- III. 현행 소득세법상 인세에 대한 과세제도
 - 1.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 2.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한 소득세법상 기준
- IV. 인세의 경우 바람직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분류기준
 - 1. 계속적·반복적 기준
 - 2. 실질적 의미의 계속적·반복적 기준
 - 3. 전통적인 계속적·반복적 기준을 보충하는 소득금액의 크기를 고려하는 개념의 도입
 - 4. 직업으로서의 종합적인 사업성판단
- V.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 납세자측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의 합리적 분류기준 제시
 - 2. 소득분류에 있어서 계층적 판단기준의 도입필요
- VI. 결론

* 본 연구는 2014년도 1학기 한양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접수일자 : 2015. 5. 30. / 심사일자 : 2015. 6. 20. / 게재확정일자 : 2015. 6. 25.

I. 서론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나목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印稅)수입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성격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인세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시적, 우발적인 인세수입에 대하여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¹⁾ 이런 상황에서는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나목에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에 앞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단지 인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경제행위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포함될 경우 거래의 분석을 통해서 소득의 분류를 적정하게 해야 하는 것은 개인소득세 과세분야에서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원작자로서 받는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의 경우 대부분 납세자 측에서는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와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의 80%중 큰 것을 인정해주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를 원하고, 과세관청은 저작권료인 인세의 계속·반복적인 성격과 금액이 큰 것에 착안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경향이 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이에 불복하여 납세자는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는 상황은 비일비재하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 실제로 장부를 유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인세의 성격상 실제 투입되는 필요경비의 비중이 높지 않아 필요경비를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함으로써 기타소득에서의 “기타”의 의미는 종합소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를 포함하는 범위에서의 “기타”여서 해석론적으로 저작권사용료인 인세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사업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세의 경우만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해석되어진다.

경비율로 추계하는 상황에서 경비율을 가장 높게 계상하더라도²⁾ 기타소득에서 인정 가능한 비율인 80%이상이 되기 힘들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80%의 경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세와 관련하여 납세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줄이기를 원하지만 과세관청의 시각은 대개의 경우 사업소득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인세가 어떤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본고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합리적 분류기준을 찾아봄으로써 향후 조세불복의 심리에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도 유익한 함의(含意)를 주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2014년 귀속분 적용 인세의 경우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일반율)인 58.7%이다.

II.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1. 사업소득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대별된다.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법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³⁾으로 과세하게 된다.

우리 소득세법은 기본적인 과세논리를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소득의 형태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인지 여부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⁴⁾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은 제1호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부터 제19호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바로 연이어 제20호에서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소득의 대표적 징표로 영리목적·자기계산(독립성)·계속성·반복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⁵⁾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세수입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일상적인 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할 때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법인사업자의 소득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3) 단, 법인세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경우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4) 서울 고법93구 25501, 1994.4.20

5)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과세되어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소득세법이 소득원천설, 법인세법이 순자산증가설을 과세논리의 기초로 하고 있어 세부적인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의 경우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든지 토지처분손익 등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 사업소득에서는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2. 기타소득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소득세법의 과세논리가 소득원천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기타소득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것만 기타소득이지 동조 동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소득이 종합소득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종합소득 범주 내에서의 기타의 성격이 아니며 종합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까지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의 기타라는 성격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심지어는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조차도 소득세법 제21조 제23항과 제24항을 근거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도 소득원천설의 논리에서는 반드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과세소득으로 본다는 논리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외의 본문규정⁶⁾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동일한 명목의 소득에서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을 제외한 소득세법상의 어떤 명목의 소득에도 속하지 않는 소득이어야 하므로 만약 어떠한 소득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6)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 및 양도소득에 속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는 없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인세의 경우 만약 인세의 성격이 사업소득으로 과세 될 수 있는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성을 가지게 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Ⅲ. 현행 소득세법상 인세에 대한 과세제도

서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과세에 대한 판단순서는 먼저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기타소득에 속하는지에 판단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려고 한다.

1.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만약 인세수입의 성격이 영리목적·자기계산(독립성)·계속성·반복성을 지닌다면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데, 저작권자가 받는 저작권료인 인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호 제18항에서 규정하는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중분류는 인적용역, 세분류는 저술가, 세세분류는 작가에 해당하게 된다.

인세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는 다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과세기간의 인세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⁷⁾

결국 인세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부에 의하여

7)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계산하는 방법도 인세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기업회계 상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계산하는 방법과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⁸⁾하는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여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추계하는 방식으로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본고의 논리전개에 중요한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2.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인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1항 제15호에서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印稅),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⁹⁾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데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¹⁰⁾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며,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의 경우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인세의 경우는 실제 투입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다른 기타소득과는 달리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 목에 의하면 인세가 속하는 업종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는 7천500만원

9)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10)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광업권·어업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사례금 중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 등과 같이 해당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80%와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무조건 종합과세¹¹⁾, 원천징수로 과세가 완전히 종결되는 무조건 분리과세¹²⁾,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의 경우에 속하며 인세도 단연히 선택적 분리과세의 범주에 속하는 기타소득이다.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한 소득세법상 기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개인이 같은 영리행위를 하더라도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에는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통하여 수령하는 수수료만 보더라도 일시적·우발적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한 기타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과세되고 계속적·반복적이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속하는 부동산중개업으로 과세하게 된다. 판례¹³⁾는 광고모델전속계약금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11) 연금계좌에서 연금의 수령한 기타소득,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복권당첨소득 등이 여기에 속한다.

12)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이 여기에 속한다.

13) 대법 2000두5203, 2001.4.24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여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해야 하고 ②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태양·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하고 ③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 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분류기준에서 기존의 계속성·반복성 이외에 그 판단에 있어서 당해 활동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을 추가적인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상 인세와 관련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한 기준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인세수입이 발생했을 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한 예를 들어보자. A교수는 평생 한권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의 판매가 매우 순조로워 1년에 1억원 상당의 인세수입이 10년간 꾸준히 발생했으며, B교수는 1년에 평균 3권의 책을 10년간 꾸준히 총 30권의 책을 저술하여 1년에 100만원 상당의 인세수입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해보자. 인세수입이 발생할 경우 인세수입의 소득구분에 대한 판단에는 그 순서가 있다. 먼저 인세수입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를 검토하고 사업소득에 속하지 않을 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저작권사용료로서의 인세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영리목적·자기계산(독립성)·계속성·반복성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위 사례의 경우 A교수와 B교수의 저술활동 중에서 누구의 활동이 계속성·반복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는 A교수는 비록 10년간 10억이라는 거액의 인세수입이 있었으나 A교수의 저술활동이 계속적, 반복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B교수의 경우는 10년간 통틀어 1,000만원의 인세

수입밖에 없었으나 저술활동의 성격은 A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계속적·반복적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인세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인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인가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생 한편의 책을 저술한 A교수의 경우, 저술활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단지 그로 인한 인세수입의 금액이 크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로 B교수의 경우 인세수입이 적다고 하여 그 저술활동의 계속적·반복적 성격이 훼손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인세와 관련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충돌에서 이러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과세관청은 계속적·반복적인 성격을 그 업무의 성격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성격 즉, 교수, 작가 등이 인세를 받는 경우 그 행위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를 따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직업군에 속한사람이 받는 인세수입은 사업소득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¹⁴⁾ 그리고 인세수입이 청구인의 신고내역 중 전체수입금액의 91%에 상당하는 주된 수입으로 동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책도 저술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례¹⁵⁾에서는 다른 책을 저술하고 있다는 등의 부가적인 조건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한바 있다. 이는 비록 저술활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이 매우 클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나온 해석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과세관행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반복적인 충돌을 유발하여 이에 대한 행정력의 손실이 지대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인세와

14)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 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 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 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는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 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소득 1264-2349, 1983.7.7.)

15) 국심 2007서3282, 2007.12.27.

관련하여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함으로써 과세관청과 납세자사이에 예측 가능한 기준의 요구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생각한다.

IV. 인세의 경우 바람직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분류기준

1. 계속적·반복적 기준

인세의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기준으로 저술행위의의 계속적·반복적 성격을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를 제외한 본문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기타소득이 종합소득 내에서의 기타가 아니라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에서의 기타이고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볼 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 기타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인세가 먼저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사업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규정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인세수입의 성격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영리목적·자기계산(독립성)·계속성·반복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적용기준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상황은 전통적인 분류기준을 따르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실제 과세단계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빈번한 충돌상황을 야기 시킨다. 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성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실질적 의미의 계속적·반복적 기준

저작권 사용료로서의 인세는 전형적인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다. 그러

므로 소득발생의 원인행위인 책의 저술활동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소득발생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적 의미에서의 영리행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 개념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 의미의 계속적·반복적이라는 개념으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부적합한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열어 놓아야 한다. 수동적 소득에서의 소득발생의 반복성은 그 행위의 사업성을 지지하는 기준으로 합리적이다. 하지만 인세의 성격상 그 발생규모가 큰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그 금액이 미미한 경우까지를 실질적 의미의 계속적·반복적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필요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전통적인 계속적·반복적 기준을 보충하는 소득금액의 크기를 고려하는 개념의 도입

인세를 과세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경우로 대별된다. 첫째는 인세수입금액이 매우 크고 저술활동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둘째, 인세수입금액이 매우 크지만 저술활동의 빈도는 매우 낮아 전통적인 계속적·반복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가 어려운 경우 셋째, 인세수입금액이 매우 미미하지만 저술활동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넷째 인세수입금액이 매우 미미하고 저술활동의 빈도도 매우 낮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인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납세자와의 충돌을 일으키는 분야는 둘째의 경우인 인세수입금액은 매우 크지만 저술행위 자체가 간헐적인 경우였다. 왜냐하면 첫째의 경우는 과세관청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 큰 저항이 없으며, 셋째의 경우는 저술활동이 빈번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매우 미미하여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넷째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기타소득이 합당하여 이에 대한 충돌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둘째의 경우인 인세수입금액이 매우 크지만 저술활동의 빈도는 매우 낮아 전통적인 계속적, 반복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가 어렵지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는 이론적으로 전통적 기준인 형식적인 계속성·반복성 기준을 적용 시 당연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금액이 매우 커다보니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사업성에 대한 징표를 그 소득의 원인행위에 대한 계속성과 반복성으로 볼 것만도 아니다. 바로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수동적 소득으로서의 계속적, 반복적의 의미를 확장하자면 한 번의 원인행위로 계속적인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의미의 계속적, 반복적의미로 볼 수 있고 설사 인세의 수령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세와 관련한 소득금액의 크기가 정상적인 소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할 만큼 그 금액이 커다면 그 자체를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직업으로서의 종합적인 사업성판단

인세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느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느냐의 한 가지 분류 기준으로서 책을 저술하는 행위를 직업적으로 하는 작가 등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계속적, 반복적인 태양을 지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에 속하는 사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 2003두 5203판결에서는 연예인 겸 광고모델로서 각종 연예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자영예술가에 해당하므로 광고모델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연예인의 경우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태양·거래의 상대방, 주 수입원·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원고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연예인의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원고의 관련 연예계 관련 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인세의 경우 책을 저술하여 그 저작권 사용료로서 인세를 받는 것이므로 작가의 경우는 책을 저술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로 저술행위의 계속성, 반복성을 작가가 아닌 다른 직업군과 같은 척도에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세를 받는 원인행위, 즉 저술행위를 하는 자의 직업이 저술행위와 매우 가까운

견련(牽聯)관계를 유지한다면 일반적인 사업성의 판단기준인 계속성·반복성의 원칙의 적용과 별개로 직업으로서의 종합적 사업성판단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V.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5장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인세의 분류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하여 전장에서 제시한 추가적인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납세자측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의 합리적 분류기준 제시

현재까지 저작권사용료로서의 인세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바, 이의 명백한 분류기준은 전통적인 사업성의 징표인 계속성·반복성이었다. 하지만 납세자측면에서 책을 저술하는 인세를 받게 되는 원인행위가 빈번하지 않은 경우 아무리 큰 금액의 인세수입이 발생하여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 그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과세관청입장에서도 금액이 커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을 공식화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납세자를 설득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충돌은 부질없는 반복적인 조세불복사건을 야기 시키고 이에 대한 행정력의 손실은 지대했다고 생각한다. 납세자측면에서 인세가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분류되는 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합리적 분류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번 저술하고 나면 그 금액의 크기와는 별개로 계속적으로 그 소득이 발생하는 인세의 특성상 소득의 원인행위가 되는 저술행위와 그 이후에 그 저술행위로 인한 인세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원인행위인 저술행위는 빈번하지 않더라도 인세의 수령행위가 장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 금액이 납세자의 인세를 제외한 소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앞의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작가라는 직업을 주업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그 직업의 특성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됨이 정당하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작가가 직업이 아니며, 빈번하게 저술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인세의 수령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금액이 인세를 제외한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미약한 경우만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게 되어 현재 인세와 관련한 조세불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번하지 않은 저술활동에서 큰 인세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 논리로 과세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2. 소득분류에 있어서 계층적 판단기준의 도입필요

인세와 관련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계속적·반복적인 징표이외에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잦은 충돌이 있어 왔다. 제4장에서 언급한 계속적·반복적이외의 추가적인 분류기준은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병렬적으로 열거될 성격이 아니고 그 순서를 정하여 계층적 판단을 하여야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분류기준으로 제일 첫 번째로 적용해야 할 것은 사업성의 기준으로 그 업(業)의 계속성·반복성이다. 이 기준은 전통적인 기준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의 범주에서 사업소득의 성격으로 변환하는 강력한 기준이 된다. 인세의 경우 글을 쓰는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인세수입을 수령하는 경우가 첫 번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인세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으며 지금까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충돌 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왔던 부분이다.

두 번째로 적용할 기준은 소득발생의 원인행위인 저술행위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저작권사용료의 대가로서 인세의 소득수령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적 의미에서의 영리행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실질적의미의 계속성·반복성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는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첫 번째 경우의 사례처럼

명백하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다. 예를 들면 작가의 경우 처럼 글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우연히 책을 한번 저술하였는데 이러한 저술행위로 말미암아 거액의 인세를 장기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는 전통적인 계속적·반복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저술행위의 빈도가 낮아(한 번의 저술행위)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본고에서 추가로 제시한 넓은 의미의 계속성·반복성 즉 인세의 수령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착안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 이 경우 위의 사례에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단지 인세의 규모가 일정규모를 넘지 않는 적은 금액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계속적·반복적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인세의 수령행위 측면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는 상황에서 그 소득금액이 커지 않은 상황까지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사업성의 범위를 넓힌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로 적용할 기준은 직업으로서의 종합적인 판단으로서의 사업성판단이다. 인세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느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느냐의 한 가지 분류기준으로서 책을 저술하는 행위를 직업적으로 하는 작가 등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계속적, 반복적인 태양을 지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에 속하는 사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 2003두 5203판결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글 쓰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작가들의 경우 대부분 저술활동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인세수입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설령 일정기간 간헐적으로 저술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직업특성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넷째로 적용할 기준은 전통적인 계속적, 반복적 기준을 보충하는 소득의 크기에 대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이 되어 진다. 작가가 아닌 개인이 한 번의 저술활동으로 인하여 거액의 인세수입이 발생되고 이후 인세수입이 없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작가가 아니라 세 번째의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며, 한 번의 저술활동은 전통적인 계속적, 반복적 성격을 지니지 않고, 단 한 번의 인세를 수령한 것은 인세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넓은 의미의 계속성, 반복성의 기준인 두 번째 제시한

기준도 적용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한 번의 인세수령행위가 그 금액이 매우 큰 것에 착안하여 사업성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VI. 결론

한 개인이 한권의 책을 저술하여 거액의 인세를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인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까지 납세자의 머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화두였다. 왜냐하면 책을 직업적으로 계속하여 저술하는 납세자는 극히 일부분이고 인세수입의 크기도 대부분 미미하여 대부분의 납세자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 한권의 책을 저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인세를 받게 되는 경우는 책을 전문적으로 저술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저술하는 행위에 있어서의 계속성·반복성이라는 전통적인 사업성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기타소득이고 소득세법의 그 어디에도 이런 경우 사업소득이라는 볼 수 있는 규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마음속 한편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과세관청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세관청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힘든 상황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개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불복이 제기되고 국세심사위원회나 조세심판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심의하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측면에서는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측면에서는 확실한 과세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하면서도 반복적인 조세불복을 줄이는데 기여하자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한번 저술하고 나면 그 금액의 크기와는 별개로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인세의 특성상 소득의 원인행위가 되는 저술행위와 그 이후에 그 저술행위로 인한 인세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원인행위인 저술행위는 빈번하지 않더라도 인세의 수령행위가 장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 금액이 납세자의 인세를 제외한 소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앞의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작가라는 직업을 주업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그 직업의 특성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됨이 정당하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작가가 직업이 아니며, 빈번하게 저술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인세의 수령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금액이 인세를 제외한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미약한 경우만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게 되어, 현재 인세와 관련한 조세불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번하지 않은 저술활동에서 큰 인세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 논리로 과세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4장에서 언급한 계속적·반복적 이외의 추가적인 분류기준은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병렬적으로 열거될 성격이 아니고 그 순서를 정하여 계층적 판단을 하여야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분류기준으로 제일 첫 번째로 적용해야 할 것은 사업성의 기준으로 그 업(業)의 계속성·반복성이다.

두 번째로 적용할 기준은 소득발생의 원인행위인 저술행위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저작권사용료의 대가로서 인세의 소득수령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적 의미에서의 영리행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실질적의미의 계속성·반복성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는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셋째로 적용할 기준은 직업으로서의 종합적인 판단으로서의 사업성판단이다. 인세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느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느냐의 한 가지 분류기준으로서 책을 저술하는 행위를 직업적으로 하는 작가 등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계속적·반복적인 태양을 지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에 속하는 사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로 적용할 기준은 전통적인 계속적·반복적 기준을 보충하는 소득의 크기에 대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이 되어진다. 작가가 아닌 개인이 한 번의 저술활동으로 인하여 거액의 인세수입이

발생되고 이후 인세수입이 없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에게 발생한 인세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되겠지만 소득세 중에서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느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느냐의 분류기준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측에게 명백하고도 실질적인 기준이 제시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전통적인 기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세과세에 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입장에서는 반복적인 불필요한 조세불복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조세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바램이다.

참고문헌 및 판례 (심판례)

소득세법전

대법 2000두5203, 2001.4.24.

서울 고법93구 25501, 1994.4.20.

국심 2007서3282, 2007.12.27.

<국문초록>

본 논문은 개인 소득자에게 저작권사용료서의 인세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쓰여 졌다. 인세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사업성요건을 만족시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사업성을 판단하는 소득세법상 명백한 기준은 그 행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한 번의 저술행위로 인하여 거액의 인세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전통적인 사업성기준인 계속성, 반복성만을 가지고 구분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과세풍토는 빈번한 조세불복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납세자의 고통과 행정력의 손실은 인세의 소득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전통적 사업성기준이외에 인세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성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추가적인 사업성기준으로는 ① 소득발생의 원인행위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소득발생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적 의미에서의 영리행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실질적 의미의 계속적·반복적 기준 ② 인세의 수령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세와 관련한 소득금액의 크기가 경상적인 소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할 만큼 그 금액이 커다면 그 자체를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소득금액의 크기를 고려하는 사업성기준 ③ 저술하는 행위를 직업적으로 하는 작가 등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계속적·반복적인 태양을 지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에 속하는 사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직업으로서의 종합적인 사업성판단 등을 추가적인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병렬적으로 열거될 성격이 아니고 그 순서를 정하여 계층적 판단을 하여야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분류기준으로 제일 첫 번째로 적용해야 할 것은

사업성의 기준으로 그 업(業)의 계속성·반복성이다.

두 번째로 적용할 기준은 소득발생의 원인행위인 저술행위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저작권사용료의 대가로서 인세의 소득수령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적 의미에서의 영리행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실질적의미의 계속성·반복성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는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셋째로 적용할 기준은 직업으로서의 종합적인 판단으로서의 사업성판단이다. 인세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느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느냐의 한 가지 분류기준으로서 책을 저술하는 행위를 직업적으로 하는 작가 등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계속적·반복적인 태양을 지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에 속하는 사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로 적용할 기준은 전통적인 계속적, 반복적 기준을 보충하는 소득의 크기에 대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이 되어 진다. 작가가 아닌 개인이 한 번의 저술활동으로 인하여 거액의 인세수입이 발생되고 이후 인세수입이 없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에게 발생한 인세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되겠지만 소득세 중에서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느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느냐의 분류기준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측에게 명백하고도 실질적인 기준이 제시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전통적인 기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세과세에 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입장에서는 반복적인 불필요한 조세불복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조세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바램이다.

주제어 : 인세(印稅), 소득분류, 사업성기준, 사업소득, 기타소득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royalty income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of Korea

Oh, Moon-Sung*

This thesis is written to suggest clear taxation standards of business and other incomes in case of individuals earning royalties under their copy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income tax law. The royalties should be categorized as business income if they satisfy certain requirements for business, but as other income if they do not. The only clear standards in deciding this fine line had been the continuity and the repeatability of the earning activity; however, under this traditional standards, the tax authorities tended to decide a huge lump-sum income from a single or infrequent writing activity as business income, even though it is essentially and de facto other income. This tendency of the tax authorities can cause frequent tax disobediences, which eventually lead to the inconvenience of tax payers and the inefficiency of administr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suggests additional standards of business other than traditional ones, such as the continuity and the repeatability of the earning activity.

Even though the earning activity itself occurs intermittently, if the income from the activity occurs repeatedly and continuously, we should apply the extended meaning of the profit-seeking activity that virtually occurs repeatedly and continuously.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income from the royalty does not happen repeatedly and continuously, if the amount of the income is comparatively significant to the regular and ordinary income, we should decide the nature of the business activity after reviewing various circumstances and comprehensive scrutiny.

The characteristic of the new taxation standard, however, should neither be listed mechanically nor in parallel; instead, should it grant the legitimacy of the taxation after the thorough review of the subject by following the certain steps by the order.

* Professor, department of tax & accounting, Hanyang Women's University

The first standards to apply in the process are the traditional ones, which are the continuity and the repeatability of the activity.

Then we have to apply the extended meaning of the profit-seeking activity in the business requirements reviewing process. Like aforementioned, even though the activity occurs intermittently, if the income from the activity occurs repeatedly and continuously, the profit-seeking activity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ly.

The third step is to apply comprehensive judgment based on the occupation of tax payers. For instance, the income from the publishing activity of authors should fall under the category of business income instead of other income, regardless of the continuity and the repeatability of the activity.

The last step is to consider the amount of income, which is the complementary standard to the traditional continuity and repeatability standards. This can be illustrated with examples such as when individuals other than authors make a huge lump-sum income with a single activity without any additional revenue in the future.

In conclusion, even with the obvious fact that individual income from royalties should be taxed, it had been extremely hard for the both parties of tax payers and tax authorities to suggest clear and fundamental taxation standards whether the royalty should fall under the business income or the other income. By suggesting additional standards other than traditional ones, this paper hopes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t tax administration by enhancing the predictability of the taxation in regard to royalties for tax payers, and by reducing the number of repetitive and unnecessary tax disobediences for tax authorities.

Key Words : royalties, income classification, category of business, business income, other income